

非營利團體의 會計節次에 關한 研究

朴 漢 錄*

I. 序 論	8. 財務諸表
II. 總 論	9. 其他 非營利團體會計
1. 非營利團體環境	10. 教 會
2. 團體特性	III. 簿記實務
3. 社會的, 經濟的 考察	1. 豐算의 會計的 處理法
4. 會計慣行	IV. 財務諸表
5. 其他 非營利團體의 會計慣行	1. 收支計算書
6. 單科大學과 綜合大學	2. 貸借對照表
7. 基金實體의 比較	V. 結 論

I. 序 論

非營利會計의 分野에서는 單式簿記의 手法에 依存 하고 있는 것이 大多數다. 非營利會計의 大宗인 官公署會計에서도 오늘날 그 消費額이 巨大함에도 불구하고, 그 會計處理方法은 原始的이며, 그 處理의 原則은 不毛의 狀態에 있다. 官公署會計를 複式簿記로서 하고자하는 所願은 이미 오래되고, 또 깊었으나 아직도 實現을 못하고 있는 事實은, 從來의 企業會計理論과 簿記論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었다.

非營利會計의 一大特色은 目的別會計의 集合體란 것이다.¹⁾ 그 集合의 規模는 크고 작고해서 여러가지이나, 企業會計와 本質的으로 相異한 것은, 企業會計는 利益測定이라고 하는 單一의 目的이지만 非營利會計는 그 目的이 單一인 利益이 아니고 여러개의 서로다른 目的이 있으며, 이 目的마다 會計가 存在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會計的 思考는 美國의 公會計의 資金會計에 그 起源을 두고 있다.²⁾ 即, 이것은 會計의 獨自自動平均集團이며, 이의 本質은 統一된 單一體로서 把握되어야 한다.

綜合大學, 初級大學, 高·中·國民學校 및 其他的 學校等과 같이 여러가지 目的을 갖는 學

* 法經大學(서울) 經營學科 副教授

1) 阪本寅藏, 『非營利會計』(東京: 中央經濟社, 1972), pp. 3—4.

2) Edward S. Lynn, Robert J. Freeman, *Fund Accounting*,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4), pp. 1—11.

校法人的 會計에 있어서도, 또 이 綜合大學, 初級大學內의 各學部 및 病院, 農園 等의 부속 기관과 같은 여러가지의 작은 目的에 對하여, 部門別로 區分하여 把握하고 있다.³⁾

이와 같은 把握方法은 企業會計에서 原價計算의 部門費計算과 같은 構想이다. 이것은 獨自 自動平均의 原理라고 하며 各目的에 對한 會計單位는 그 單位自身이 一個의 完成한 會計主體가 되며, 各者의 貸借對照表와 收支計算書를 갖는다.

非營利團體의 目標는 財政의 利益을 考慮하지 않고 社會가 바라는 紿付를 提供하는 것이다. 이러한 非營利團體의 會計處理를 研究하여 健全한 財務諸表가 作成되어 그 利用者에게 正確한 財政狀態와 經營成績이 報告되어야 한다.

II. 總論

1. 非營利團體環境

非營利團體는 利益目的이 없이 社會福利役務를 提供하고 賣買 또는 讓渡할 수 없는 衡平의 法人格의 權利를 갖고 있는 經濟的 實在體이다. 非營利團體는 어느 期間에도 歲出以上의 歲入超過를 實現하는 計劃을 設定할 수도 있으나, 剩餘資產은 그 役務를 提供하는데 支出되어야 한다. Kohler는 『會計學辭典』에서 歲入과 歲出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였다.⁴⁾ 歲入一課稅, 關稅와 其他의 財源, 歲出一負債의 支給利子, 現金支給, 또는 資產의 取得, 役務 또는 損失 填補를 目的으로 하는 資產의 對替. 또 政府單位會計全國委員會는, 歲入을 “指定期間中의 所有持分의 增加”라고 定義하였다.⁵⁾ 實際的慣行은, 歲入은 專用基金의 흐름을 基金實體中에 綱羅한 것이라고 함.

非營利團體는, 두 개의 範疇에 區分된다. 第一區分은 病院이나 私立大學의 運營과 같이, 創業時의 基本金을 受領한 후에는 獨立採算經營을 한다. 第二區分은, 繼續的으로 全部 또는 一部의 補助金을 必要로 하는 團體다. 이 第二의 團體中에는, 期間의이며 強制的 賦課에 依하여 維持되는 政府單位事業이나 保險이나 福利厚生團體, 教會나 自發的이며 繼續的인 寄附金에 依하여 維持되는 其他의 團體를 말한다.

一般的으로 事業의 目標는 有形福利의 報酬라고 보며, 그 所有者들에게 利益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非營利團體의 目標는, 財政의 利益을 考慮하지 않고 社會的으로 바람직한 紿付를 提供하는데 있다.⁶⁾ 그들의 基本的 紿付提供目標에도 불구하고 어떤 非營利團體는 그들 紿付

3) 高橋吉之助, 『學校法人會計制度の基礎』(東京: 國元書房, 1957), pp. 9-30.

4) Eric J. Kohler, *A Dictionary for Accountants*(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57), pp. 202 and 420.

5) *Municipal Accounting and Auditing* (Chicago: National Committee on Governmental Accounting, 1951), p. 243.

6) *Ibid.*, p. 4.

의 어느 부분을 填補하기 위하여 料金을 徵收한다. 例로서, 大學의 授業料나 病院이 그 診療에 對하여 받는 醫療收入과 같은 것임. 만약 料金이 費用을 超過하는 일이 있어도, 그 差益은 紿付目標에 따라 有益하게 써야 한다.

2. 團體特性

法的, 經濟的 環境의 制約下에서, 實存하는 團體의 運營上의 必要性은 團體의 形態를 決定하는 큰 要因이 된다.

自己財產의 運用을 管理하는 個人이 갖는 權利는, 資本主義制度에 內在하는 理念이다. 個人이 株式會社의 株式에 自己의 資金을 投資할 때, 사람들은 그 持分에 따라서 比例하는 發言權을 갖는다. 그래서, 資本主義制度下에서는 會社는 그들 所有者들에 의하여 經營管理를 委託받게 된다.

非營利團體에 있어서는, 所有하고, 賣買할 수 있는 衡平한 權利는 갖일 수 없다.⁷⁾ 그러므로, 그들의 經營管理는 다른 角度에서 規制된다. 團體의 會員의 權利는, 支出金 또는 據出金의 金額에 關係 없이, 投票權에 의하여 運營된다. 例로서, 한市民은 政府가 하는 決定에 對하여 一票를 갖는다. 또 教會員은 教會의 行事에 對하여 一票를 갖는다. 이와 같은 例에서 볼 수 있는 管理는 全會員에게 주어진 平等한 權利다. 非會員團體, 私立大學이나 病院에서도, 定款이나 다른 規定에 準하여 選出 또는 任命된 理事會를 갖는다.⁸⁾

3. 社會的・經濟的 考察

왜 非營利團體가 自由企業制度下에서 存在하는가? 社會的 意識이 깊은 사람들은, 利潤動機에만 依存해서는 많은 所望에 對한 紿付를 充足할 수 없다는 것을 實感하였다.⁹⁾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必要로하고, 바라는 바의 紿付를 얻기 위한 購買力이 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이들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紿付를 提供하는 것이 社會的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政府 또는 다른 非營利團體는 그 必要度를 充足하도록 努力한다.¹⁰⁾ 그래서 稅金이 公立學校의 運營에서 徵收되고 또 自發的인 據金이 가난한 사람들의 社會的 所望에 對한 紿付를 提供하는 健康이나 福利厚生活動을 可能케 한다. 非營利團體의 報告에 對한 強調點은 實在體로서의 業務에 對한 記述이다. 이것과 對照해보면 營利企業의 會計報告는 獨立採算의 實存體로서의 能力의 表示를 強調한다.

7) 長澤榮一郎, 『社團法人・財團法人の會計實務』(東京: 同文館, 1972), pp. 3—7.

8) R.M. Mikesell and Leon E. Hay, *Governmental Accounting*, (Homewood, Illinois: Richard D. Irwin, Inc., 1969), pp. 1—2.

9) *Ibid.*, p. 48.

10) Irving Tenner and Edwards. Lynn, *Municipal and Governmental Account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0), pp. 1—8.

團體의 財務諸表의 內容은 그것을 活用하겠다고 期待하고 있는 團體의 必要度에 따라 決定된다. 利用者가 바라는 情報와 그 實用性의 限界를 會計士는 그 記錄과 資料를 通하여 確認하기 위한 節次를 企劃한다. 非營利團體의 財務報告를 利用하는 主要團體는 다음과 같다.

1. 理事會와 같은 外郭管理團體
2. 內部經營管理者
3. 後援者, 支持者, 또는 會員
4. 그 實在體의 役務의 利用者
5. 債權者
6. 規制나 資格認定의 機關

4. 會計慣行

會計士는 一般的으로 利用者層의 情報의 必要度가 그 支持者에게 實在의 信託受託關係가 主要한 決定要因 이란것을 強調한다. 元來, 利潤動機가 없으므로 關係者들에게 評價할수있는 責任을 課하나 會計士는 이의 概念을 “出納表示會計責任制”로 본다. 이 出納會計責任의 理念下에서 貸借對照表는 團體에게 專用되는 資產, 負債를 表示하고, 그리고 收支計算書는 流動資金의 흐름을 表示한다.

報告란 理念을 使用하여, 그 實在體의 運營을 分析할 때는, 資源은 果然 바람직한 것인가, 또 이들 專用의 成果를 評價할 때는 注意하여 分析하여야 한다. 事實, 利害關係者들은 資金의 源泉이나 그 專用方法에 對한 詳細한 內容을 알기를 願한다. 勿論 이 詳細한 報告內容는 資金의 取得이나 處分에 對하여 個個의 項目別管理에 強調點을 두게 된다.

基本金實體와 管理

資金의 흐름에 對한 가장 完全한 管理는 基金會計技法을 使用하여 達成된다.¹¹⁾ 會計實體의 資金은, 基金이라고 하는 獨立採算會計科目的 몇 개로 分割하게 된다. 各基金은 去來나 다른 該當科目 또는 다른 該當基金의 어느쪽에 記錄 한다. 그래서 會計法의 強調點은 基金中에서 流動資產이 取得되고 또 基金中에서 그들이 使用된 財源을 表示 하는 것을 主로 한다. 基金은 金額 또는 特定한 여러 活動을 遂行하기 위한 目的, 또는 特定의 規制, 制限 또는 限定에 따른 어떤 種類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分割되는 것이며, 獨立採算財務와 會計實體를 構成하는 것임。¹¹⁾

財源은 가끔 資產의 同義語로서 使用된다. 그러나, 그것은 基金實體를 위하여 여러 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支出되는 資產이란 뜻으로 해석한다. 個別의 基金實體를 設定하는데 있어서

11) Edward S. Lynn S. Lynn and Robert J. Freeman, *Fund Accounting*,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pp. 6—8.

의 基準은, 法規上의 要請이나, 據金者의 指定, 또는 管理行動에 依한다. 만약 法規 또는 據金者의 規定이 個別의 計定의 實體의 用途를 限定한다면, 財源은 個別의 基金에 區分되어야 한다. 한편, 管理者가 一般運營目的에서 專用할 수 있는 資金의 흐름은, 豫算配賦技法을 通하여 管理할 수 있다. 만약 管理의 種類나 會計責任制가 不明確한 경우에는 判斷으로 適切한 管理標準을 選定해야 한다.

너무나 多은 基金實體를 使用하는 것은, 會計資料를 斷片的으로 만들고, 그 結果 組織全體로서의 有機的인 財務報告의 作成을 阻害한다. 그러나, 가끔 既存의 基金中에 別途의 資產이 計定中에 使用될 때는, 新基金을 두는 것이 適切하다.

第2의 資產의 使用에 對한 管理標準은 그들 資產에 對하여 特定한 要求의 指定을 하는데서 達成된다. 이 指定은, 어떤 方法으로 資產 또는 全資產의 特定한 곳에 使用되는가를 指示하는 内部統制會計를 設定함으로서 그 目的이 達成된다. 이 管理標準은 資產이 長期借入債務의 償却에 使用될 資產을 減債基金에서 分離하는 것은 企業會計의 慣行과도 一致된다. 内部規制會計는 減債基金의 割當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財務報告의 資本의 部에 表示된다. 이 規制는 配當金支給規制에도 도움이 된다.

支出金專用化管理의 理念

別個의 基金의 實在가 한쪽에서는 特定의 制限下에서의 財產의 取得이나 處分을 管理하는 問題에 關한 解答이 되나, 다른 技法은, 取得의 支給可能을 明確히 하는데 使用되며, 또, 一般運營資金의 使用을 明確하게 한다. 出納會計責任에 對한 理念의 擴張은, 資金의 項目別 管理를 必要로 하고, 이들 資產의 使用을 制限하는 支出金管理技法을 使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會計士는, 使用되는 資產을 區分하지도 않고 支出計劃에 따라서, 全般的인 内部資金狀況을 파악해야 한다.

支出金專用管理와 豫算

支出金管理의 理念은, 運營의 詳細한 計劃(金額表示)의 作成을 必要로 한다. 例로서, 政府實體를 위한 管理는, 市民을 위한 奉仕의 提案目錄을 要請하는 支出金額의 個別管理에서 始作된다. 豫算原案은 다음에 市民을 代表하는 團體에 의하여 檢討되어 承認, 可決, 修正, 또는 否決된다. 豫算原案이 承認되어는, 豫算에서 各項目에 의하여 生기는 支出金의 限度가 決定된다. 어느 變更이던지 同一政府團體의 審議를 必要로 한다. 週期的으로 各費目的 現實的金額이 支出金額과 比較되고 支出可能하며 專用化되는 残餘金額을 決定한다.

支出金管理와 財務報告

運營上 支出金管理의 實施는, 收入과 支出을 表示하는 記述書作成을 強調한다. 보다 더 有効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報告書는, 各項目別의 實績과 豫算의 對照關係를 明確히 하여야 한다.

支出金管理에 있어서 強調範圍

財務報告書와 豊算의 慣行은, 한 種類의 非營利團體와 다른 團體와 다른 方法인 것 같이 생각된다. 論理的으로는, 非營利團體는 自發的인 寄附金에 의하여 支持되므로 政府單位가 하는 管理만큼 專用化에 強調點을 두고 있지 않다. 거기에는 또 團體가 그들의 紙付의 料金을 公式的인 管理豫算資料의 企業型의in 廣範한 運用을 하도록 料金을 賦課하는 傾向이 있다.

前述한 慣行은, 3種의 報告書에 適用되고, 그들은 非營利事業의 3個의 主要部門이 된다. 이 報告書는 市財務委員協會에 의하여 展開된 것이며, 그것은 市當局에 關한 會計慣行의 原則을 規定한 것이며 一般的으로 널리 認定하고 있다. 잘 認定되는 報告書가, 單科大學이나 綜合大學, 病院에 關하여도 展開된다.

營利企業의 會計慣行變形

營利企業과 非營利團體의 會計慣行의 間隙을 다리 놓기 위해서 非營利團體의 會計慣行의 特異한 樣相에 對하여 整理해 본다.

基金會計技法을 使用할 것을 強調. 이미 記述한 바와 같이 그들 構成員인 非營利團體의 受託關係는, 廣範한 基金會計技法을 使用한다. 이들의 技法은 團體의 資金을 各各獨立基金群으로 分割한다. 그 結果로서 그들 團體의 會計記錄에 多은 計定名이 나타난다. 非營利團體의 會計士는 하나의 總計定元帳에 關與하는 代身, 各基金計定에 關한 元帳이 個別의in 獨立基金群에 關與하게 된다.¹²⁾

資金計劃管理에 關한 會計方法

非營利團體는 紙付를 目的으로 하므로, 그들의 會計記錄은(病院의 경우를 例外하고) 通常, 收入, 支出 및 純益을 公表하지 않는다. 利益에 主眼을 두는 記錄을 하는 代身 多은 非營利團體는 基金計定을 通하여 資金의 流出入에 關한 管理責務에 主眼을 둔다. 收入計定은 資金의 流入을 表示하고, 支出計定은 資金의 流出을 表示한다. 여기에는 資本과 收入, 支出의 區分이 거의 없다. 兩者는 通常, 類似한 支出會計로서 記錄되고 그것이 계속하여 基金殘額 또는 剩餘金設定이 된다. 收支報告는 流動資金의 取得과 處分에 對하여 資金管理會計債任을 強調한다. 그것은 營利企業의 損益報告書(Income Statement)에서 보이는 運營報告書에서 보이는 運營報告와 같이 解釋해서는 아니된다.

減價償却은 記錄하지 않는다.¹³⁾

病院을 例外로 하고 非營利團體는, 通常獨立基金의 固定資產에만 減價償却費를 計上한다. 이와 같은 慣行은, 이 期間中에 發生하였거나, 또는 實際로 支出한 資本의支出에서 控除하는 傾向을 持續한다.

12) Edward S. Lynn and Robert J. Freeman, *Fund Accounting*,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74), pp. 135—146.

13) R.M. Mikesell and Leon E. Hay, *Governmental Accounting*, (Homewood, Illinois, Richard D. Irwin, Inc., 1969), pp. 608—614.

基金別管理의 強調點

支出金會計債務에 對한 또 하나의 表示는, 豫算의 支出金類型의 廣範한 採用이다. 大量의 事例에서, 豫算은 豫算의 資料가 여러 計定에 있어서 公式的으로 記錄되고 있는 것과 같이 重要的한 管理技法이다. 이것과 對照的으로, 病院이나 다른 團體는, 그 業務에 料金을 徵收할 때에 期待되는 運營의 水準이, 營利企業에 있어서 資金과는 유사한 公式的 關係에 따라 豫算資料를 利用한다.

會計의 基準

非營利團體 가운데서, 病院만이 通常會計의 完全한 發生主義에 따르고 있다. 다른 團體는, 그들의 報告에 있어서 即時 充當할 수 있는 資產과, 모든 發生필의, 또 先給項目 보다도, 未支給債務만을 表示하는 傾向이 있다.¹⁴⁾

非營利會計의 方程式

營利會計의 여러 技法은 資產이 負債와 自己資本을 加算한 것과 같다는 것을 뜻하는 基本方程式에서 展開된다.¹⁵⁾ 名目上의 計定分類를 包含하는 方程式은 다음과 같다.

$$\text{資產} = \text{負債} + \text{自己資本} + \text{收入} - \text{支出}$$

貸借의 法則은, 全要素를 積極的으로 기술하는 이 方程式을 變形함으로서 展開된다. 方程式을 變形하면 다음과 같다.

$$\text{資產} + \text{支出} = \text{負債} + \text{自己資本} + \text{收入}$$

左側(資產 또는 支出) 分類內의 計定은, 그들 中에서 增加가 借記된다. 減少는 貸邊에 나타나고, 反對의 法則이 右側(負債, 自己資本 또는 收入) 計定에 專用된다.

類似한 基金計定에의 接近으로서 現金支給能力에 對한 強調는 다음 方程式으로 본다.

$$\text{資產} + \text{歲出} + \text{基金間의 債權} = \text{負債} + \text{歲入} + \text{基金間의 債務}$$

右側의 計定은, 借邊에서 增加하고, 貸邊에서 減少한다. 또 그 反對의 法則이 右側의 計定에 대하여 適用된다. 專用支出金과 歲入豫算計定이 方程式에 附加되나, 그것을 각各 對照支出과 對照收入計定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觀測에 準據하여, 支出金은 借記되고,豫算收入은 이들 項目的 增加를 反映하여 貸記한다.

5. 其他 非營利團體의 會計慣行

單科大學과 綜合大學, 病院과 福利厚生團體, 教會나 公立, 小·中·高等學校도 非營利團體다. 그들은 公共의 受託 財產이란 性質에서도 類似하다. 그의 管理者는, 그들 構成員의 信任關係下에서 運營되고 있다. 大量의 이들 團體의 特質은, 政府의 團體와 類似하다. 結국, 그들의

14) *Ibid.*, pp. 779—783.

15) *Ibid.*, pp. 29—33.

會計慣行도 많은 點에서 類似하다.¹⁶⁾

6. 單科大學과 綜合大學

政府單位와 單科大學 및 綜合大學의 報告原則의 比較

單科大學이나 綜合大學의 會計原則은 많은 點에서 政府單位에 의하여 受容되고 있는 原則과 類似하며, 兩者는 基金會計原則에 따를 必要가 指摘되고 있고, 使用될 基金 또는 基金群을 明確히 表示해야 한다. 兩者는 그것이 基金이 되고, 또는 資產이 獨立採算業務와 關連하고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計定中에 減價償却의 實施를 認定하는 것을 拒否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들에 비하여 發生하는 會計慣行이 兩者間에 있는 相違點과 類似點을 알아보자.

法의 規定; 이들 報告書의 比較는 明白한 差異를 露呈한다. 單科大學이나 綜合大學의 報告書는 法의 規定이 編成 여부를 制度에 나타내는 것을 原則的으로 好む하지 않는다. 그러나, 專用基金의 財源을 分離함으로서 各基金이 用途에 加해진 制限이나 規定을 尊守할 必要性은 있다. 이 差異는 規制된 環境 中에서 單科大學이나 綜合大學이 達營되는 데서 由來된다. 原則으로 國立大學은 法的인 性質의 規制를 받고 있으나, 한편 私立大學의 規制는 主로 그들의 後援者에 의하여 負課된다.¹⁷⁾ 어느쪽이던 信任關係의 責任을 自覽하여 業務를 遂行해야 한다. 會計原則의 報告上의 相違는, 實際보다는 外見上 더욱 明確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會計慣行上若干의 制限의in 效果가 있다.

豫算上의 慣行

自治市의 會計原則은, 會計組織이 收入과 支出에 對하여 豫算統制制度를 두는 것을 要請하고 있다. 더욱이 單科大學이나 綜合大學의 報告書는, 豫算統制制度를 要求하고 있지 않으나, 運營上의 豫算보다 完全한 組織이 이들 機關에서 普遍的으로 行해지고 있다.

豫算과 그 配賦는 大多數의 個個의 項目이 統制되고 있으나, 또 事實上 公式的으로 統制되고, 結果的으로 豫算은 運營의 達成程度를 調整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러한 點에서 單科大學과 綜合大學의 運營은 營利企業의 그것과 類似하다. 巨額의 收入金額, 特히 私立學校에 있어서는, 提供하는 業務가 이미 決定된 計劃에 따라서 查定하면서 實現되는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業務가 豫算條項에 의하여 實現된다. 例로서, 만약 登錄金이 많으면서는, 計劃한 經費의 割當增加가, 機關으로 하여금 擴大計劃의 要求에 合致할 수 있도록 豫算의 追加가 行해진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는, 豫算은 政府에서 行하는 것보다 훨씬 彈力的으로 運用된다. 그 結果, 豫算資料는 會計에 있어서 比較的 적은 公式的인 拘束力만 갖는다. 만약 豫算資料가

16) R.M. Mikesell and Leon E. Hay, *Governmental Accounting.*, (Homewood, Illinois: Richard D. Irwin, Inc., 1969), pp. 1-12.

17) Irving Tenner And Edwards Lynn, *Municipal and Governmental Accounting*, 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50), pp. 356-376.

財務諸表에 記錄된다고 하여는 그것들은 通常, 經費計定으로 貸邊에 記入된다.豫算歲入은 計定中에는 記入되지 않는다.

會計基準

市當局의 會計原則은 發生主義을 使用한다. 그것은 通常, 그것을 연계되는 때의 收入의 認知와, 그것을 부담하게 되는 經費의 認知를 必要로 한다. 이 市當局의 報告는 營利企業이 解釋하는 發生主義, 그것은 資本과 收支項目과 減價償却費를 計上하는 것과는 다르다. 單科大學과 綜合大學의 報告書는 修正된 發生主義이며 그것은 通常, 經費가 支給될 때, 또는 計定書가 實際支給되는 것을 必要로 한다고 計上하도록 권한다. 이 解釋에 의하여 少數의 單科大學 또는 綜合大學은 發生하는 利子收益 또는 豫定支給의 經費를 認識한다.

減價償却을 위한 會計

自治體單位中에서는, 減價償却是 獨立採算基金에만 認定한다. 單科大學이나 綜合大學의 會計에서는, 減價償却是, 資產의 對替가 流動財源의 指定에 의하여 基金化가 되는 때에는, 基本財產과 有形固定資產에 對해서는 認定하고 있다. 이러한 規程은, 效果로서, 減價償却이 償却資產의 對替 때문에 現金 또는 다른 流動資產에 의하여 表示할 때만 記錄한다. 自治體單位나, 單科大學이나 綜合大學 雙方의 報告書作成에 關한 原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減價償却을, 그와 같은 原價計算이 必要한 때는, 單位原價의 計算에 用도록 提唱된다. 一般的으로, 減價償却會計에 關한 限, 이들 두 種類의 非營利團體의 慣行間에는 근소한 차이가 있다.

附帶事業

單科大學이나 綜合大學의 附帶活動은 一般的으로 支出以上의 剩餘金을 낳게 하는 獨立採算性下에서 하게 된다. 더욱이 사람들은 이들 두 개의 會計慣行은 重大한 差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記錄이 政府單位의 獨立採算基金과 같은 것으로서 維持되어야 한다.

첫째의 相違點은 附帶活動에서 使用되고 있는 施設의 減價償却을 計上하지 않은 때도 있다. 이 結果, 그 活動의 運用을 보이는 記述書는 收益報告라고 하기보다는, 收入과 支出의 記述書가 된다.¹⁸⁾

둘째의 相違點은 通常, 個個의 附帶活動을 위하여 準備하는 個別的 貸借對照表는 作成하지 않는다. 附帶活動에서 使用되는 償却資產은 施設基金會計實體의 部分으로 본다. 短期資產과 負債은 그들이 當期中의 基金에 對한 貸借對照表와 關連한다. 이들 會計慣行은 基金群으로부터 附帶活動을 除外하는 것으로 본다. 이들 두 個의 相違點은, 別個의 基金實體라고 하기보다는, 別個의 部나 局으로서 각각의 活動을 處理하는 慣行에 따르게 된다. 附帶活動의 收入과 支出 또는 그들의 相違點은 期間中의 收入과 支出의 資金運用表에 나타남,

18) *Ibid.*, pp. 926—951.

7. 基金實體의 比較

政府나 單科大學의 報告書는 基金會計 慣行의 使用을 要件으로 한다. 그러나, 單科大學에 勸하는 基金實體는, 政府單位에 대하여 示唆되는 것과는 여러면에서 重要한 相違點이 있다. 여기서 한 相違點은, 單科大學의 計算報告書는, 基金으로 보다는 基金群의 實體로서 본다. 이 慣行은, 各團體가 두 개 또는 그 以上의 下位部門을 갖고 있고 각각의 個別的 基金과 大體로 等價值에 있다.

單科大學과 綜合大學의 計算報告書에는 다음과 같은 基金群이 抽獎된다.

1. 流動基金(Current funds)
2. 貸付基金(Loan funds)
3. 基本財產과 다른 非消費基金(Endowment and other nonexpendable funds)
4. 年金基金(Annuity funds)
5. 施設基金(Plant funds)
6. 代理基金(Agency funds)

流動基金：流動基金에 一般運營目的의, 副次活動의, 當座의 限定的目的을 위하여 專用할 수 있는 財源을 包含한다.¹⁹⁾ 이들 基金은 即 流動一般基金은 市事業의 一般基金과 類似하고, 그리고 流動限定基金은 政府單位에 對한 特定歲入基金에 類似하다. 流動限定基金에 對한 財源은 個別基金實體를 使用하여 經理해야 한다는 것을 法的으로 要求는 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떼로는 個別資產과 殘額計定을 使用함으로서 流動基金으로 分離된다. 이 點에서 이 基金의 特定基金實體會計慣行에서 하는 判斷과 特定賦課基金과는 類似하다. 대개, 流動基金에 對한 會計慣行은 市의 實體의 一般基金이나 特定收益基金에서 使用되는 것과 類似하다. 基金群의 個別從屬部門은, 流動一般基金이나 流動限定基金에 대하여 維持된다. 만약, 이들 財源의 모두가 基金實體에서 設定되어 있다면, 慣行이 特定賦課基金을 위하여 使用되는 것과 유사한 것은 總運營을 위하여 專用化되는것부터 個別의로 流動限定基金에도 專用된다. 明確히, 計定名目은 特定業務用에 따라 變更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들 計定이 表示되는 貸借對照表나 收入支出의 報告書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貸付基金：貸付基金은 教員, 學生 또는 事務員 等에 貸付될는지도 모르는 財源用의 基金으로 使用된다.²⁰⁾ 이 基金資產에는 現金, 投資, 貸付金返還을 받게 되는 것도 包含한다. 政府의 基金으로 正確히 꼭 같은 것은 없지만 貸付回轉基金으로 維持되고 있는 獨立採算基金이 貸付基金이 된다. 이 基金實體를 위한 會計慣行은 어느 政府의 獨立採算基金會計에서 準據한 것과 類

19) Irving Tenner and Edward S. Lynn, *Municipal and Governmental Account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0), pp. 359—360.

20) *Ibid.*, pp. 928—949.

似하다. 그러나, 單科大學이나 綜合大學을, 通常, 貸付基金財源을 위한 會計에서 完全한 發生主義보다도 좀 期限을 短期로 할 것을 提案한다. 貸付基金資產은 連結貸借對照表에서도 보여진다.

基本財產基金：單科大學이나 綜合大學의 會計의 大部分이 基本財產이나 其他 非消費基金과 關連하여 유지된다.²¹⁾ 이들 基金은, 通常, 寄附者 또는 管理者에 의하여 設立된 條項에 따라, 信託된 財產도 包含된다. 이들 基金을 使用하는 主要目的은, 通常 또는 特定目的으로 收益을 낳게 하는 것에 投資하는 것임. 多은 點에서, 基本財產基金은, 代理基金의 主要한 部

모 델 大 學
貸 借 對 照 表
財 務 年 度 末
流 動 基 金
一 般

資 產		債務외 基金殘額	
現 金	W ×××	支 給 計 定	W ×××
반 을 計 定	×××	其 他	×××
其 他	×××	剩 餘 金	×××
		留 保	×××
		適 用 額	×××
合計 一般基金 資產	<u>W ×××</u>	一般基金債務외剩餘金殘額	<u>W ×××</u>
		限 定 資	
現 金	W ×××	支 給 計 定	W ×××
其 他	<u>×××</u>	其 他	×××
		基 金 殘 額	×××
全特定流動基金資產	<u>W ×××</u>	全特定基金債務외剩餘金殘額	<u>W ×××</u>
合計 流動基金 資產	<u>W ×××</u>	全流動基金債務외剩餘金殘額	<u>W ×××</u>
		貸 付 基 金	
現 金	W ×××	貸 付 基 金 殘 額	×××
受 取 計 定	×××		
其 他	<u>×××</u>		
全貸付基金資產	<u>W ×××</u>	全 貸 付 基 金	<u>W ×××</u>
		基本財產외 其他의 非消費基金	
現 金	W ×××	基本財產 殘 額	W ×××
投 資	×××	其他非消費其他殘額	<u>×××</u>
其 他	<u>×××</u>		
全基本財產외 其他非消費基金資產	<u>W ×××</u>	全基本財產외 其他非消費基 金	<u>W ×××</u>

21) IrvingTenner and Edwards. Lynn, *Municipal and Governmental Accounting*,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Inc, 1960), pp. 207—210.

		施設基金	
		非消費施設基金	
現 投	金 資	W ×××	支給非消費施設基金殘額
債務消却을 위한全基金		<u>W ×××</u>	<u>W ×××</u>
			合計非消費施設基金
			<u>W ×××</u>
			債務消却을 위한基金
現 投	金 資	W ×××	債務消却基金殘額
債務消却全其他		<u>W ×××</u>	<u>W ×××</u>
			全消却基金殘額
			<u>W ×××</u>
		施設投資	
土 建	地 物	W ×××	債務 W ×××
施設全投資全施設金 資		<u>W ×××</u>	施設純投資 <u>W ×××</u>
產		<u>W ×××</u>	施設全投資 <u>W ×××</u>
			施設基金殘額 <u>W ×××</u>
			全債務외 施設基金殘額 <u>W ×××</u>
總	計	<u>W ×××</u>	總 計 <u>W ×××</u>

分과 類似하다.

이들 基金의 運用에 의하여 얻은 收益源은, 通常指定된 用途에 對하여 流動一般 또는 流動限定基金에 流用 한다. 그 名稱이 表示한 바와 같이, 一般基本財產基金의 利益은 一般管理에 使用된다. 이들 基金의 投資에서 實現된 財源은 流動一般基金에 流入된다. 한편, 獎學金基本財產基金에 의하여 얻은 收入이, 流動限定基金 또는 그 財源이 獎學金을 提供할 것을 限定하고 있는 流動基金의 流動限定基金 또는 流動基金의 쪽에 流入한다. 一般基本財產基金의 制限範圍內에서, 經營管理者는 通常, 獎學基金殘額을 增加시키는 基金內에서 收益을 留保 여부의 選擇權을 갖는다. 이들 基金의 會計慣行은 代理基金을 위하여 提出된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發生主義의 不完全한 點이 通常, 基本財產基金會計에 볼 수 있다. 例로서, 利子는 通常, 基本金投資에는 發生하지 않는다.²²⁾

本基金基金에서 流動基金에의 對替는, 名基金의 帳簿의 基本金殘額計定에 借記하고, 基本金基金, 現金에 貸記하고 處理 한다. 또 流動基金에 있어서 現金을 借記하고, 그리고 基本金收益이 貸記된다.

年金基金 : 年金基金에는 現金과 年金 또는 生活信託協約에 따른 投資가 包含된다. 이 範圍의 基金은 一般的으로 期間이 月, 年이며 特定金額의 支給을 하도록 贈여자 또는 寄贈者の 指定에 의하여 어느 누가 그의 生涯 또는 特定期間에 受領하게 됨. 이 期間의 終了에서 基金에 殘存하는 財源은, 一般的으로 그 團體의 資產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一般的的 用途의 基本

22) Irving. Tenner and Edward S. Lynn, *Municipal and Governmental Account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0), p.370

金의 追加 또는 其他特定의 用途에 專用된다.

어느 觀點에서 보여는, 年金基金은 基本金에 類似하다. 이들 金額이 比較的 少額 일시는, 그들은, 가끔 이 範圍에 一括된다. 이들 基金의 會計慣行은 또 政府單位에 있어서 代理基金 때문에, 會計에 있어서 使用되는 것과 類似하다. 이들 財源은 會計에서는 元金과 收益의 殘額은 個別의으로 表示되어야 한다.

施設基金：單科大學 또는 綜合大學의 施設基金은 많은 點에서 一般固定資產이나 長期債務에 대한 政府計定群의 組合과 매우 類似하다.²³⁾ 그것들은 또 이들 計定群과 하나의 重要點에서 다르다. 施設資產의 取得을 위하여 指定된 財源은, 또 이 基金實體의 一部分에 包含되어 있다. 施設基金에 記錄되고 있는 去來는 備忘計定群實體와 定型의 基金實體의 混合體도 包含한다.

單科大學 또는 綜合大學은 個別의 施設基金을 많이 갖이고 있다. 施設基金群에 關한 貸借對照表에는 各各 個別의, 또 非消費施設基金, 또 債務의 消却基金이나 施設中에 投資한 基金도 包含한다.

代理基金：代理基金에는 非營利團體에 保管中인 基金이나, 그 團體에는 所屬되지 않은 것이다.²⁴⁾ 이 定義의 內容은, 團體는 그와 같은 基金의 資產을 所有한다는 것을豫期할 수 없다. 代理基金은, 例컨대, 學生에게 貸付를 하기 위하여 政府에 의하여 設定된 基金도 包含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機關은 單純히 基金을 管理下에 두고 政府를 위하여 代理權을 行使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收入金과 支出金의 會計：單科大學이나 綜合大學에 의하여, 現金 또는 財產의 領受가 實現될 때, 두 個의 一般的範圍로 나누어진다. 即,

1. 運營目的에 適用할 수 있는 受領
2. 非運營受領

單科大學 또는 綜合大學에 의하여 直接 運營을 위하여 現金과 其他財源이 調達되며는, 그 것은 一般的的用途에 專用될 수 있는 財源의 運營과 限定의 目的을 위하여 使用되는 財源으로 再區分된다. 이들 財源을 受領하며는, 資產計定은 借記되고 配賦收益計定은 貸記한다. 期間이 終了되며는 收入과 支出計定은 그곳에서 生기는 相互差異에 對하여, 剩餘金計定을 마감한다.

一般과 特定流動基金의 收入은 通常, 源泉에 의하여 分類된다. 만약 現金이 한 基金에서 다른 基金에 先給 또는 借入되며는, B/S上에는, 先給을 한 基金群이 資產으로서 金額表示를 하고, 그리고 先給을 受領하며는 基金群의 負債로서의 金額을 표시한다. 이 原則의 目的是 基

23) Irving Tenner and Edward S.Lynn, *Municipal and Governmental Account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0), pp. 370—390.

24) R.M. Mikesell and Leon E. Hay, *Governmental Accounting*, (Homewood, Illinois, Richard D. Irwin, Inc., 1959), pp. 192—193.

金間의 貸借를 公示하는 것임. 一般的으로 基金間의 貸借는 피하는 것이 좋다. 위에 關한 說明은 現金의 受領 또는 다른 財產에서 元金에 附加 하는 것이며, 또는 基金殘額 또는 物理的施設에만 使用되는 것은 流動目的에 支給 되는 所得에서 個別的으로 經理된다. 이 경우에 基金의 指定은 內外的으로 負課된다. 따라서 寄贈者는 流動基金收益에서 財源의 受領은 除外된다. 이와 같은 型의 受領은 直接으로 施設基金, 基本金基金 또는 다른 資本基金의 指定이 있는 것에 包含된다. 이 慣行은 特定의 改良을 위하여 발행하는 公債發行의 賣出을 通하여 財源을 受領하는 政府單位에서 使用하는 것과도 比較할 수 있다. 이 指定內에서 發生하는 特定去來와 關係있는 財源은 이것을 判斷한다는 것은 受領時의 記錄과 關連하여 重要問題이다.

大學競運動技術書間中度年計算損益務務財損財學大學對抗運動計算中度年計算損益務務財損財

收 益		
숏 트 블	₩ ×××	
바스켓트볼	×××	
기 타	<u>×××</u>	₩ 500
經 費		
管 理 費	×××	
宣 傳 費	×××	
施 設 保 管 費	×××	
숏 트 블	×××	
바스켓트볼	×××	
기 타	<u>×××</u>	₩ 450
收益對經費剩餘金		₩ 50

收益과 經費의 이 計算書會計는 協會全體로서의 收支計算書이다. 大學對抗運動競技에 대한 報告는 이 課外活動과 關連하는 收入 ₩500과 支出 ₩450에 關하여 詳細히 表示된다.

8. 財務諸表

單科大學 또는 綜合大學의 財務諸表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²⁵

- 各基金群의 貸借對照表는, 會計記錄中에 包含된다.
 - 各基金群의 剩餘金이나 基金殘額中의 變化의 報告書
 - 收益의 源泉에 의한다. 그리고 經費의 職能別 分類에 依한 流動收益과 經費에 關한 報告書

25) *Ibid.*, pp. 927—941.

4. 여러가지 協賛計劃은 各種附帶活動에 관한 個別的 損益計算을 內包하고 있다.

이들 報告는, 單科大學이나 綜合大學의 會計記錄은, 一般的으로 自治體單位에 對한 基金實體原理와 흡사한 方法으로 記錄되고 있지마는, 單科大學이나 綜合大學에서 使用되고 있는 慣行中 어떤 것은, 自治體單位에서 使用되고 있는 것과는 相異하다. 이들 相違點은 다음과 같다.

1. 基金實體가 教育機關의 運營의 特質에 맞도록 別途指示하고 있다.
2. 會計記錄은 消費하지 않은 財原인 基本金基金에 큰 力點을 두고 있다.
3. 施設基金은, 行政實體를 위하여 使用되는 두 개의 計定群에 包含되고 있는 要素와, 施設資產의 取得을 위하여 指定된 流動財源으로 된다.
4. 豫算中에 嚴하고 強力한 資金配賦 管理를 強調하지는 않고, 豫算資料는 財務報告에는 조급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5. 附帶課外活動은 크기보아 政府單位의 獨立採算計定과 比較할 수 있으며, 一般的으로 基金實體라고 하는 것보다는 部門으로 處理한다. 이 編成은 別途로 指定한 名目計定을 要求하나, 課外活動과 關連하는 財源이 個別의으로 自動平均計定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6. 보다 強調하는 것은, 收入과 支出이 均衡한다는 것이다.
7. 單科大學이나 綜合大學의 會計慣行의 基金實體에 관한 概念은 固定性이란 點에서 政府會計의 慣行 만큼 完璧하지 않다.²⁶⁾

9. 其他 非營利團體會計

學區, 教會나 健康厚生福祉事業과 같은 많은 다른 團體는, 非營利團體로서 區分된다. 이들 團體의 運營上의 特質은 이미 論議한 團體의 것과 많은 點에서 類似하다.²⁷⁾ 教會에 對해서는 原則上 權威主義의 報告書는 作成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學區當局은 市의 報告書와 密接히 對應되는 報告形式을 採用하고 있다. 學區의 會計慣行은 政府單位에서 하는 것과 類似하다.

保健과 厚生福利團體 : 保健과 厚生福利團體는 歷史的으로, 非營利領域에서, 다른 어떤 部面에서 行하고 있는 것과 比하여 그들의 會計나 報告하는 慣行은 너무 形式化하지 않았다. 保健衛生과 厚生福利團體는 一般的으로, 基金會計慣行에 따랐다. 그러나 이들 團體의 運營에는 一般基金 또는 活動基金 以外의 基金은 必要없다. 이 경우 基金會計技法은 企業會計處理와 類似하다. 報告의 慣行은 가끔 企業이 하는 法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것은 當局이 出納責任

26) 高橋吉之助, 『學校法人會計制度の基礎』(東京, 國元書房, 1967), pp. 21-30.

27) *Standards of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for Voluntary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s* (New York: National Health Council and National Social Welfare Assembly, 1964). Comments from Accounting Review, October 1965, by permission of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에 對하여 團體에게 強調하기 때문이다. 이들 團體의 報告技法은, 現金主義 또는 修正發生主義가 더러 使用된다. 그 結果, 財務報告는 財源의 흐름과 流動資產에만 關한 財務狀態를 表示함. 그것은 通常, 企業會計에서 보이는 報告書에 比하여 조금 難解하나 完備된 것이다.

最近, 全國保健會議와 全國社會福祉集合에 의한 合同企劃으로 研究가, 保健과 福祉領域에서의 會計慣行의 定義를 할 것을 要求하는 大量의 權威 있는 報告가 나온다. 이에 關한 出版內容은, 그들의 團體에게는 内容을 統制하는 規則과 財務報告形式을 認定함으로서 보다 情報的이며 또 統一된 財務報告로 昇格시킬 것을 企圖하고 있다. 이와 같은 規定은 財務報告書는 寄附者들이나, 公衆이나 다른 利害關係者에게 團體의 出納責任을 反映할 것이라는 理念下에서 創設되었다. 이와 같은 理念下에서는, 報告하는 團體는 그것이 後援者에 對하여 運用上의 能率과 같이, 資金調達과 支出金에 對하여 그의 出納責任을 明確히 해야 한다. 위에 指摘한 出納責任者の 制度下에서는 다음과 같은 規程을 勸告한다.

1. 發生主義會計가 使用되어야 한다.

2. 徵發에서 偶發損失을 適切히 調整하는 受入抵當權이 貸借對照表에 反映되어야 한다. 그 것은 그 年度에 設定한 抵當權收入으로서 處理해야 한다.

3. 經營管理者가 責任을 지는 모든 重要한 資產(固定資產을 包含한다)이 貸借對照表上에 報告되어야 한다.

4. 減價償却은, 그것이 基金化 되어 있지 않은 이상, 通常, 經費로서 記錄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基金化되어 있지 않은 減價償却이 貸借對照表上의 評價計定으로 記錄되어 있다면, 相殺計定으로서 借邊에 投資計定을 計上하여야 한다.

5. 獨立으로 寄贈한 서비스의 價值는, 團體의 財務報告書에 表示되어서는 아니된다.

6. 基金會計慣行은 遵守되어야 한다.

7. 收支計算書는, 收入을 源泉別로 支出을 職能別로 系統化하여야 한다.

8. 團體를 保全하기 위한 支出은, 團體의 計劃을 遂行하기 위한 支出에서 慎重히 分離하여야 한다. 이 團體의 規則이 詳細히 表示되어 會計資料의 提示에 注意를 다하여야 한다. 保健과 福利厚生分野에 있어서, 財務報告의 가장 뜻있는 側面은, 維持費와 紿付遂行費와의 區分에 注意한다. 여기서 維持費란 團體를 運營하고 維持하는데 必要한 費用이다. 그들은 實在體를 유지하는 것에 關連하는 單位費用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紿付遂行費는, 團體가 提供할려고 하는 紿付活動을 行하는 支出이다.

이들 用語는 어느 程度까지 明確히 定義가 되지마는 그러나, 實行段階에서 經費를 區分하는 데는 가끔 大量의 困難이 수반된다. 例로서, 美國癌協會의 紿付中 하나는, 癌의 症候에의 發見에 關한 것을 公衆에게 教育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情報를 包含하여 이團體가 公衆을 招致하기 위한 文書의 印刷와 配給의 費用은 任意로 區分하는 것 이외는 分類하기가 어렵다.

또한 潛在的 寄與를鑑別하는 일은 그 寄與金 一원當 몇 錢이 實際로 意圖한 紙付設定에 要한 것인가를 안다는 것은 매우 興味가 있는 일이다.

保健과 福利厚生團體의 報告에 있어서, 職能別로 세운 經費나 資本支出의 專用配賦를 慣行으로 한다. 이와 같은 配賦는, 報告書를 보는 讀者에게, 寄贈物이 어찌한 紙付를 提供한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²⁸⁾ 運營報告書는 다음과 같이 有効하게 作成되어야 한다.

보 렐 團 體		
歲 入 歲 出 報 告 書		
財 勿 年 度 間		
歲 入 :		
基本金收入	W	× × ×
寄 付 金		× × ×
서비스料金		× × ×
其 他 收 入		× × ×
歲 入 計	W	× × ×
維持支出金		× × ×
基金募集費		× × ×
配賦管理費		× × ×
意圖한 紙付活動에 專用可能收入		× × ×
給 付 經 費		
職 能 1.	W	× × ×
職 能 2.		× × ×
其 他		× × ×
未消費 또는 超過金額	× × ×	W × × ×

10. 教 會

教會는 대개 通常 分擔管理에 의하여 運營되고 있다. 通常 基金會計慣行이 行해진다. 一般基金 또는 流動基金支出이 牧師나 執事에 依하여, 政府豫算이 作成되는 것과 類似하며, 業務에 對한 特定計劃이 設定된다. 宣教計劃 또는 豫算是 一般的으로 承認, 調整 또는 承認을 받기 위하여 集會에 提出된다. 일단, 教會員에 의하여 承認되면豫算是 財務期間中 教會의 運營計劃이 된다. 이 計劃을 遂行하기 위하여 獻金이 募集된다. 그리하여 支出이豫算許容額의 範圍內에서 管理된다.²⁸⁾

分擔管理와 責任體制上, 이들 團體는 一般的으로, 報告의 基準으로서 現金 또는 修正現金主義를 使用한다. 收入과 支出兩者는 같이豫算計劃에 關連하고 있다.豫算資料가 政府實體에 對하여 解說한 바와 같이, 計定中에 記錄되지마는 가장 共通의慣行은 實績과豫算額을 收支計算書에서 相互關連시킨다. 다음 報告書는 教會에 對하여, 收入과 支出을 報告하는데

28) F. Emerson Andrews, *Attitudes Toward Giving*,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53), p. 28.

있어서 型式으로 使用될지 모르는 計定을 보인다.

	모 렐 教 會		豫 算		
	收入과 支出의 報告書			會計年度의 最後의 月	
	金額		今 月	前年同月	對前年度增減
	今 月	前年同月	今 月	前年同月	對前年度增減
收 入 :					
日曜學校寄付金募集					
獻金皿의 獻金合計					
1977年의 誓約					
1977年의 誓約					
雜 收 入					
收入合計					
支 出 :					
慈善行爲					
크리스트者教育					
教 典					
敎會學校共給品					
會議와 캠프基金					
外來講師와 指導者					
파티와 리크리에이션					
雜					
小 計					
音 樂					
스 탭					
牧 師					
敎育牧師					
執 事					
守 衛					
小 計					
當座經費					
印刷, 事務費					
保管共給品와 서비스					
雜					
小 計					
建 物					
保險(不動產外 自動車)料					
什器備品費					
保 守 費					
小 計					
債務消却費					
支出金 合計					
收入의 經費를 넘는 剩餘金					

一般 또는 流動基金의 教會貸借對照表는, 割當可能한 資產과 이들 資產에 對한 權利만을 定型的으로 公表되어야 한다. 固定資產과 長期債務는 個別施設基金貸借對照表로서 公表된다. 그려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財務報告가 전혀 省略된다.

III. 簿記實務

1. 複式簿記適用

非營利會計에서 使用되고 있는 會計處理는, 單式簿記가 大部分이다. 單式簿記의 缺點은 다음과 같다.

(1) 收入支出의 記錄에만 의한 處理는 現金概念을 分離하기 어렵다. 收入은 現金의 収納이며, 支出은 現金의 消費다. 複式簿記에서는 去來의 二重性으로 이 收入・支出이라 하는 抽象的概念과 現金이라 하는 具體的 通貨와의 分離에서 始作된다. 巨額의 金錢消費를 行하는 官公署會計에서 그 財產種類中에 있는 現金, 預金이 除外되는 것은 이상하다. 그러나 그것은 이와 같은 概念의 分離가 되지 않은 單式簿記의 當然한 区別이다. 預算決算의 收支計算書 그것이 바로 現金의 收支를 表示하며, 그 剩餘金은 現金預金의 殘額이다. 이와 같은 現金主義會計는 現狀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나, 現代經濟社會에서 이룩하는 非營利會計의 消費行爲가, 이와 같은 原始的 去來와 處理에 머무는 것은 不可能하며, 憲意性排除의 必要와 같이, 現金主義보다는 發生主義會計에 옮아가야 하는 必然性을 갖고 있다. 이 發生主義會計는 單式簿記에 의해서는 處理不能이며 複式簿記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事實이다.

(2) 財產은 簿外管理가 된다. 財產은 支出에 의하여 購入되나, 收入支出의 記錄에서 處理됨으로, 購入된 財產은 새로 臺帳을 作成하고 管理한다. 이 臺帳은 다른 帳簿와는 無關係로 孤立된 帳簿가 되는 것은 當然하다. 豐算差減簿와 같다. 이것은 複式簿記의 貸借平均의 原理에 의한 自動檢證作用下에 處理되는 帳簿와 比較한다면 그 弱點은 明確하다.

(3) 單式簿記의 處理로서는 貸借對照表는 所謂 損益法이라하는 複式簿記의 原理에 따라 作成될 수 없고, 또 作成한다고 해도, 財產法이라 하는 一定時點의 在庫에 의하여 配列하는 方法밖에 없다. 여기서 非營利 會計가 거의 貸借對照表를 作成할 수 없는 狀況은 여기서 明瞭하게 浮彫된다. 이와 같은 財產總在庫에 의한 配列에는 資產과 負債의 差額은 殘額에 불과하며, 그래서, 貸借對照表의 重要한 部分인 純財產의 概念이 發生할 餘地가 없다.

(4) 現金의 收支에 그치는 關係上, 未收, 未支給部分의 簿記의 把握은 不能이다. 여기서 會計에 通常있는 憲意性은 더욱 커진다. 故로 이것을 排除할 能力은 極端으로 低下한다. 單式簿記에서 이 憲意性排除機能이 없는 것은 會計로서는 致命的인 缺陷이다.²⁹⁾

29) 阪本寅藏, 『非營利會計』(東京: 中央經濟社, 1972), pp. 33—34.

위와 같은 單式簿記의 缺點은 複式簿記에의 移行을 當然히 必要로하고 오늘날에는 이미 모든 非營利會計가 複式簿記를 採用해서야 하는 必然性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圓滑히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理由에서일까. 그것은 複式簿記가 單式簿記에 比하여 어렵다던가, 專門의이며 理解가 쉽지 않다던가, 記帳者的 ability의 問題는 아니다. 그것은 複式簿記 그 自體에 本質的인 缺陷이 있다고 볼 수 있다. 會計學의思考가 不充分한데서 온것이다.

不動產, 動產, 物品 等과 같이 固定資產의 購入이 豫算에 의한 支出에 의하여 行해지므로, 從來의 複式簿記處理로서는 豫算支出의 處理뿐이지, 支出하여 購入한 財產은 어떤 帳簿에도 記載되지 않는다.

지금 從來의 複式簿記의 分介에서, 이것을 보며는,

分介(A)

(借邊) 備品購入費 400,000 (貸邊) 現金 400,000

이다. 이것은 複寫機 2臺를 單價 20萬원에서 購入한 경우의 從來의 複式簿記에 의한 分介다. 이와 같은 分介로서는 複寫機 2臺는 어느 帳簿에도 記載되지 아니하므로, 새로 物品臺帳을 作成하여, 이 中에서 다른 帳簿와의 有機的인 關連이 없이, 孤立하여 記載되어 管理된다. 이 孤立한 物品臺帳은 單式簿記에 의한 處理의 경우와 同一하며, 財產의 管理機能을 發揮할 수 없고 從來의 複式簿記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非營利會計가 複式簿記에 移行할수 없었던 理由다. 그러므로, 從來의 複式簿記論을 一步前進시킨 새로운 手法을 加해야 한다.

非營利會計는 豫算에 의한 統制下의 會計이며, 豫算是 單純한 見積은 아니다. 그것은 各機關의 意思決定의 具體的이며 또한 最終段階의 行爲이며, 當該年度의 收入支出을 拘束하는 힘을 附與받았기 때문에 반듯이 豫算의 數字를 會計帳簿에 處理하고, 試算表體系에 轉入시켜야 한다. 여기에 從來의 複式簿記論을 초과하는 새로운 簿記論을 追加해야 한다.

(3) 從來의 複式簿記는 商業簿記를 그 母體로 하고, 그것은 利益測定이라하는 單一形態의 會計處理를 想定한 處理法이었으나, 非營利會計에만 特有한 여려 種類의 公共的 效果를 目的으로 하는 複數形態의 會計處理法에는 그대로 바로 適用되지 않는다. 이點이 바로 從來의 複式簿記의 範疇를 벗어난 形態의 適用을 必要로 한다.

(4) 利潤追求를 위한 財務諸表가 公共的 効果目的의 財務諸表와는 當然히 相異한 本質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本質의 相違가 專門家에 의하여 論하게 된 事實은 거의 없고, 긴 세월동안 放置된채 있었다. 여기에 財務諸表論은 새로운 展開가 必要하게 된다.

以上과 같이 簿記論의 進步가 없었기 때문에, 또 會計學이 企業會計의 領域에 停滯되었기 때문에, 非營利會計는 原始的인 會計處理에 머물러야 했다. 이와 같은 것이 單式에서 複式簿記의 移行이 不可케된 理由이다. 이와 같은 事情을 可能한 範圍內에서 解決하여, 非營利會計

가 複式簿記의 適用을 可能하게 하며, 따라서, 貸借對照表를 作成할 수 있는 段階에 이르러야 한다.

1. 豊算의 會計的 處理法

非營利會計의 收入支出이 豊算에 의한 收入支出이며, 이것이 簿記의 處理에 큰 進展을 要求해왔다. 하나는 豊算數字의 會計處理, 다시 말해서, 豊算殘額의 簿記의 統制의 問題이며, 둘째는 貸借對照表計定科目이 豊算에 의하여 收入支出되는 경우의 簿記의 把握에 關한 問題다. 이것을 詳述하면 다음과 같다.³⁰⁾

豐算殘額의 簿記의 統制：豐算의 數字를 會計帳簿組織에 導入하는 手段은 다음과 같이 分介한다.

分介(B)

(借邊) 收入豫算 55,000,000 (貸邊) 支出豫算 55,000,000

分介(C)

(借邊) 支出豫算(備品購入費) 400,000 (貸邊) 現金 400,000 이다.

分介(B)는 總會나 議會 等 最高議決機關의 議決을 본 豊算數字의 分介다. 이 分介로서 總計定元帳에 收入豫算과 支出豫算의 計定口座가 開設되고, 收入豫算口座借邊에 5千5百萬원, 支出豫算口座貸邊에 5千5百萬원이 轉記된다. 同時に 收入豫算과 支出豫算을 構成하는 各款의 數字가 補助簿에 記入된다. 補助簿의 各款의 金額의 合計는 恒常 總計定元帳의 收入豫算과 支出豫算의 各金額과 一致한다.

이 補助簿의 名稱이 收入豫算殘額帳과 支出豫算殘額帳이다. 그리하여 이 경우 왜 收入豫算의 數字가 借邊에 支出豫算의 數字가 貸邊에 計上되는가는, 이것들이 單純히 觸媒的 計定科目이며, 豊算殘額을 算出하기 위한 分介다. 現金의 收納은, 例如서,

分介(D-1)

(借邊) 未收稅金 ××× (貸邊) 收入豫算(所得稅) ×××

分介(D-2)

(借邊) 現金 ××× (貸邊) 未收稅金 ×××

이다. 現金의 支出은, 例如서,

(分介) (E)

(借邊) 支出豫算(旅費交通費) ××× (貸邊) 現金 ×××

의 分介이며, 이것으로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收入豫算, 支出豫算是 分介(D)와 分介(E)의 경우와 反對側에 나타나서 殘額이 算出可能하다.

30) 長澤榮一郎, 『社團法人・財團法人的會計實務』(東京, 同文館, 1972), pp. 101—152.

分介(C)는 分介(A)의 경우, 複寫機 2臺를 購入했을 때의豫算支出에 의한 分介다. 借邊(支出豫算)은 大計定科目이며, 같은 借邊(備品購入費)는 小計定科目이다. 大計定科目은 總計定元帳用의 것이며, 이 支出豫算口座의 借邊에 40萬원이 轉記되어, 小計定科目은 補助簿인 支出豫算殘額帳簿용이며, 그中 備品購入費口座의 借邊에 40萬원이 轉記된다. 貸邊(現金)은 總計定元帳現金口座貸邊에 同時에, 補助簿인 金錢出納帳貸邊에 轉記된다. 그리고 分介(B)에서 支出豫算은, 總計定元帳貸邊에 備品購入費豫算額은 支出豫算殘額帳貸邊에 轉記됨으로 分介(C)의 轉記가 있고 난 뒤에 差減額이 殘額欄에 計算記入된다. 지금 備品購入費의豫算額이 90萬원이라면, 위의 分介에서 다음과 같은 記帳이 이루어진다.³¹⁾

總計定元帳口座

支出豫算

日字	摘要	借邊	貸邊	殘額
分介(B)	(收入豫算)		55,000,000	
分介(C)	(現金)	400,000		54,600,000

支出豫算殘額帳口座

備名購入帳

日字	摘要	借邊	貸邊	殘額
分介(B)	(收入豫算)		900,000	
分介(C)	(現金)	400,000		500,000

이들豫算殘帳의 金額은 去來가 發生時마다 減算되는 特徵이 있다.

이것은 從來의 簿記의 收益, 費用의 科目이 加算되어 가며는 逆現象이 일어난다. 따라서 月末에 總計定元帳에서 集計된 殘額試算表는 收入豫算과 支出豫算이라하는 計定科目이 각각의 殘額으로 表示되고 또 試算表全組織의 一員으로서 貸借平均의 自動檢證機能의 統制下에 編入하게 된다. 따라서豫算殘額試算表等式은 다음에 의하여 證明될 수 있다.³²⁾

支出豫算殘額－收入豫算殘額＝(支出豫算－支出)－(收入豫算－收入)＝支出豫算－支出－收入豫算＋收入

支出豫算＝收入豫算이므로, 收入－支出이 된다. 이 算式에 의하여 收入－支出는, 支出豫算殘額－收入豫算殘額과 같으며, 企業會計의 資產－(負債+資本)＝收益－費用의 試算表等式과 같은 非營利會計의 試算表等式이 成立된다.

위와 같이 收入豫算, 支出豫算是 그 殘額과 같아, 簿記的으로 取扱하는 경우, 그 性格에 對하여 알아보자. 먼저, 支出豫算－收入豫算殘額은 非營利會計의 收支計算書의 等式이며, 그것은 흡사 收益－費用의 企業會計의 損益計算等式인 것과 같이 同型이란 것을 알 수 있다.

31) *Ibid.*, pp. 113-119.

32) *Ibid.*, p. 9

따라서, 이 認識은 豊算書의 形式과 收支計算書의 本質과 形式, 그리고 財務諸表論 全般에 걸쳐서 一貫하여 흐르는 基本的 認識이다. 그리하여, 이 兩者的 同型 等式의 相異한 點은, 다만, 收入豫算과 支出豫算의 數字가 同額으로 插入된 것 뿐이다. 여기서, 이 收入豫算의 數字는 收納해야 할 金額의 豊想計上인一面을 갖고 있으나, 이 點이 바로 從來의 簿記, 會計의 概念과 다르다. 從來는 이와 같은 收益의 豊想은 保守主義의 原則과 實現主義의 原則에서 計上하지 않는 것이 一般慣行이다. 또, 支出豫算의 數字는 支給豫想을 하는 點, 企業會計의 充當金 計定에 類似하나, 그러나, 充當金은 期初에도 期中에도 생기지 않는 것이 原則이다.³³⁾ 그것은 期末에 費用科目과 組合되어 豊想計上되어 次期에 移越된다. 支出豫算은 收入豫算과 組合하여 期初에 計上되고, 期末에 消去된다. 또 充當金은 次期에 執行되나, 支出豫算額은 當期中에 執行되고, 結局期末에 抹消되어 次期에 가서는 無力, 無用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收入豫算과 支出豫算의 金額은 從來의 簿記的 概念에서는 理解되지 않는 種類이다. 그리하여 豊算額은 決算時에는 架空數字이며, 不必要의 數字가 되며, 豊算의 數字를 無視해도 決算은 可能하다. 따라서 豊算是 그 統制的 任務가 終了한 時點, 即 簿記 技術의 으로는 決算最終의 마감直前에, 다음 分介를 해서 消去한다. 이것이 豊算이 確定된 時點의 分介(B)의 反對分介다.

分介(F)

(借邊) 支出豫算 55,000,0000 (貸邊) 收入豫算 55,000,000

이라 하면 豊算額은 決算때문에 完全히 消去되고, 그 結果 實算額이 瞬間的으로 表面化된다. 이것은 重大한 實務上의 効果라고 指摘할 수 있다. 이때 收入豫算, 支出豫算의 計定科目은 從來의 簿記的 概念과는 전혀 異質的 概念이다. 豊算額이 決算의 立場에서 보여는 不必要하지만, 그러나 아직 期中의 執行段階에서 收入支出을 統制하는 힘을 갖는다는 것은, 흡사 化學反應에서 觸媒와 같이, 그 反應과는 直接關係는 없으나, 그 反應을 助長시키는 것으로서 必要한 것과 같이, 豊算是 보다 좋은 決算結果를 갖어오기 위한 觸媒의 性格을 갖었다고 볼 수 있다. 從來의 簿記는 充當全等으로, 一定한 根據하에서 豊算하는 數字를 導入하였으나, 其他는 모두 實數 또는 實數에 近似하게 測定된 數字만을 取扱하여 왔다. 豊算의 數字는 전혀 새로운 性格의 數字라고 해야 한다. 여기에 觸媒의 計定科目으로서의 收入豫算, 支出豫算의 概念을 새로 加하여 簿記論을 進展시켜야 한다.

따라서, 豊算의 會計處理는, 官公署 會計의 豊算決算이던가 會計決算이던가의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다. 이것은 官公署會計만의 問題가 아니고, 다른 非營利會計에서도 大小官公署會計에 類似함으로, 非營利會計全體의 問題가 된다. 여기에서 豊算決算이란 豊算과 決算이란 意味가 아니고, 하나의 單語로서 使用된다. 豊算과 對比되는 決算이란 것이며, 그것 以外는 전혀 같은 單純한 決算形式이다. 會計決算이란 이것도 하나의 單語이며, 企業會計에서 볼 수

33) 長澤榮一郎, 『社團法人的會計實務』(東京: 同文館, pp. 279—280).

있는 바와 같은 決算을 한다.

會計決算制度에 對하여 公會計에서는는 企業의 경우와 다르며, 收益性을 終局의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一定한 行政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豊算을 中心으로 運營된다. 豊算과 對比되는 決算은, 그 執行의 狀況을 明確히 하는 것을 主眼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豊算決算을 한다는 것은 不可缺이며, 從來와 같이 行한다. 그러나 今後, 日日會計處理를 通하여 財產, 物品 및 債權債務를 包含한 財務의 狀況을 明確히 把握하고 넓은 意味에서의 財產을 保全하는 經理節次의 改善에 對하여 研究할 必要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單純한 豊算決算의 對照에 그치지 않고, 別途로 金錢收支를 基礎로 하는 財產, 物品 및 債務를 包含한 總合的, 有機的인 會計決算을 하고, 그 結果를 나타내는 會計制度를 設置할 것이다.³⁴⁾

IV. 財務諸表

1. 収支計算書

消費理論과 回收理論 : 먼저 企業은 營利를 目的으로, 利益을 얻기 위한 消費에서始作된다. 投下된 資產은 販賣經路를 通하여 回收된다. 그回收된 額은 當初에 投下된 額과 比較하여 多은 경우에는 利益이며, 적은 경우에는 缺損이다. 이回收がない는 利益은 存在하지 않는다. 그러나, 非營利會計의 경우에는 먼저 公共的效果를 얻기 위한 消費에서始作하나, 그效果는 大部分 金額의 評價가 될 수 없는 것들이다. 그것은 行政效果이며, 政治效果이며, 相扶相助, 社會奉仕, 社會福祉, 教育效果, 勞動條件改善, 其他公共的, 共同的 福祉 等이며, 行政效果, 政治效果도 또한 多樣하다. 勿論, 이와 같은 效果는 結局 企業의 生產性을 높이는 條件을 釀成하고 있는 것은 否定할 수 없으나, 이것은 어찌까지나 產業, 經濟의 基盤의 問題이며, 會計의 問題와는 直接關係가 없다. 非營利의 行爲는 本來 資金의 回收를 企圖하지 않은 消費이며, 또 營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當初부터 回收를 豊定한 消費는 아니다. 여기서는 消費運動만 있고 回收運動은 없다.

利益과 回收運動과는, 어떠한 關係가 있는가? 利益獲得의 行爲가 回收運動의 起動力이 되는가? 또는 回收運動이 利益을 낳는가? 어느쪽이 原因이며, 어느쪽이 結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發生의 順序는 먼저, 意思가 있고, 이 意思가 利益獲得의 概念을 決定하고 이 概念에 의하여 回收運動이 展開되는 것 같다. 效果獲得과 消費運動도 같다. 效果를 얻기 위해서는 資金의 投下와 消費가 必要하며, 消費運動이 없으면 一定한 目的의 效果는 期待할 수 없다. 따라서 效果獲得의 意思가 必然的으로 回收運動을 否定하는 消費運動에만 끝인다. 이들 關係

34) 阪本寅藏, 『非營利會計』(東京: 中央經濟社, 1972), pp. 48—60.

는 繼續的으로 觀察해보며는, 一層 顯著한 相違가 나타난다. 即, 次期의 資金의 運動에서 企業會計에서는 回收運動에서 얻어지나, 利益을 加하여 增加한 當初資金을, 다시 再投下하여 새로운回收運動이 始作된다. 이것에 反하여 非營利會計에서는, 消費殘額에 새로운 調達資金을 加하여, 다음의 消費運動이 始作된다. 이것을 資金의 運動形態에서 보면은, 企業會計는 循環運動이며, 非營利會計는 斷續運動이다.³⁵⁾

債權債務를 複式簿記로서 把握하는 경우 會計期間의 概念이 發生主義會計處理로서 明確히 確立되지 않으면은 收支計算書作成의 基礎的理論이 缺하게 된다. 따라서 期間主義의 實踐으로서 複式簿記適用을 可能케하고 現金主義會計處理를 脫皮하고 發生主義會計處理를 採用하여 非營利會計의 收支計算은 完全히 整備된다.

2. 貸借對照表

非營利會計의 貸借對照表論은, 보기 드물다. 그것은, 이會計의 分野에 貸借對照表作成의 事實이 드물다. 이 事實은 重大하다. 이것을 그대로 放置해 둔다는 것은 會計人으로서는 事實 유감이다.

A. 非營利意思

會計에서 意思는 根元의인 要素를 갖고 있다. 收支計算의 消費理論과, 損益計算의 回收理論이, 非營利意思와 營利意思의 當然의 歸結인 것과 같이, 또 收支計算의 經費와 損益計算의 費用과의 區別이, 역시 非營利意思와 營利意思인 것과 같이, 貸借對照表의 本質을 解明하는 경우, 結局, 究極의 意思如何란 點에 歸一된다. 이것은 從來의 貸借對照表論에서 볼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會計學이 企業會計이며 單純히 營利意思의 認識만 있었다. 따라서, 오늘까지의 會計學은 意思를 問題로 할 必要가 없었다. 다만 問題가 되는 것은 意思決定의 地연이다. 이것은 電子計算機의 利用으로 最近 크게 부각되었다. 여기에 非營利會計라고 하는 異質의 會計가 있다. 더욱이, 公企業會計도 存在하는 實態에 비추어서 會計의 範圍가 擴大되고, 從來의 생각은 맞지 않는다. 지금 會計에 關하여 恒常 營利意思만이 存在하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는 非營利意思도 있고 公企業意思가 混在하는 것을 考慮하여 會計를 論해야 한다.³⁶⁾

이 意思는 各各의 分野에서 各各의 會計의 구석구석까지 미친다. 企業會計의 경우 그 全分野에 걸쳐서, 消費는 營利 때문이고 投資도 또 營利 때문이다. 그곳에는 한푼의 틈도 矛盾도 없고 營利意思是 企業의 구석구석까지 차있어야 한다. 一見 營利에 無關係한 資金의 消費도, 大局的으로는 營利에 關한 考慮를 함으로서 營利意思에 反하여 하는 行爲는 無責任이며, 또 背任으로 엄하게 追及받고 責任을 진다. 非營利意思도 그 意思를 會計의 끝까지 미치도록 하여야 한다.³⁶⁾ 따라서, 非營利會計의 경우에 營利의 意思를 表現하고 있는 會計處理는 絶對許

35) 阪本寅藏, 『非營利會計』(東京, 中央經濟社, 1972), pp. 148—154.

36) 高橋吉之助, 『學校法人會計制度の基礎』(東京, 國元書房, 1965), pp. 21—31.

容되지 않는다.³⁷⁾ 또 營利行爲를 하는 경우에도 直接的으로 主目的인 非營利行爲를 보다 더 效果 있는 것으로 하는 限 許可되어야 하고 또 非營利部門과 收益部門과의 混同도 絶對로 不許되어야 한다.

B. 純財產

財產—負債=純財產이라하는 等式은 우리들의 日常生活의 경우에 极히 普通의 常識이다. 그 것은 會計라고 하는 全領域에 걸친 普通概念이다. 이 純財產에서 財務諸表論上 非營利會計와 企業會計와의 比較에서 极히 明瞭한 性格의 相違點을 發見할 수 있다.

먼저, 非營利資金의 據出은, 自由意思에 의한 團體組織에 參加해서 義務的으로 據出하는 것도 있고, 意思如何에 를구하고 強制徵收되는 것도 있다. 後者가 主로 官公署나 特殊立法에 의한 強制加入에서 團體가 내는 것이며, 前者が 그 以外의 非營利團體 또는 個人에 關한 據出이다. 때로는 이들 據出이 混合된 것도 있고, 전혀 各自의 自由意思에 의한 據出도 있다. 그것은 전부 臨時的인 偶發的인 寄附金에 속하는 據出이나, 이것은 活動의 根據가 되는 資金源은 아니다. 이와 같이 하여 據出된 資金은 非營利意思에 따라서 各各 據出時에 定한 目的實現을 위하여 消費된다. 그리하여 이 資金은 目的外에 使用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企業會計의 據出資金이 營利意思에 따른 目的 以外에는 使用을 禁止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據出資金은 非營利, 營利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르다.

(1) 無配當性：營利에 對한 據出金은 會計上 資本金의 名稱으로 處理한다. 個人이나 組合의 경우에는 元入金이다. 이 資本金, 元入金은 設立當初부터 利益의 分配가 豫定된다. 그러나 非營利會計에서는 이와 같은 配當金, 分配金은 豫定될 수 없다. 그것은 利益이 아니다. 또 金額으로 表示될 수 없는 抽象의인 效果를 主目的으로 하고 있다.

(2) 無返還性：營利企業에서는 解散時 殘餘財產의 分配를 最初의 據出時에 豫定하고 있다. 따라서 解散時點에서 또 配當의 時點에서 各據出者의 據出累計額이 恒常 現時點에서 正確히 計算把握되어야 한다. 非營利會計에서는 據出者의 總據出額의 算定은 不要하다. 그것은 元來消費하는 것을 豫定하고 있으므로 절대로 返還을 豫定하지 않는다. 또 때로는 部分的으로 退會時 據出金總額의 몇割에 해당하는 金額을 支給하는 것을 約束하고, 據出을 要請하는 것도 있다. 主로 相互扶助團體에서 볼 수 있다.³⁷⁾

(3) 消費殘留額과 回收總計：非營利會計의 據出資金의 움직임은 繼續的이며, 企業會計의 움직임은 循環運動인 것은 이미 記述하였다. 各運動의 結果 어떠한 모양으로 經營組織體內에 存在하는가를 보자. 非營利의 資金은 그 意思에 따라서 投資—消費—殘留—新投資—消費→와 같이 轉換하나 消費의 結果據出金資金이 效果目的達成을 위하여 全部 없어지는 것이 理想이다. 그러나 現實로는 資金이 남던가 不足한다. 남는 경우가 殘留이며 不足한 경우가 追加據

37) 長澤榮一郎, 『社團法人・財團法人的會計實務』(東京, 同文館, 1972), pp. 419—425.

出이 된다. 通常, 捷出資金 - 消費資金 = 消費殘留資金이 있는 것이 가장 正常的인 狀態이며, 이 消費殘留資金은 次年度의 新捷出資金이 加算되어, 次期의 活動이 始作된다. 이것이 바로 斷續運動이다.

지금 다음 圖表를 그려 보자.

貸借對照表

流動資產 (17)	負債 (10)
	資 $17-10=7$
固定資產 (13)	本 金 $20-7=13$
計 30	計 30

第1圖

貸借對照表

流動資產 (12)	負債 (19)
固 定 $7+11=18$	$19-12=7$
資 本 產 (18)	資 本 金 (11)
計 30	計 30

第2圖

第1圖는 다음 事項을 나타낸다. 資本金 20는, 固定資產 13으로 構成되어 있는部分과, 流動資產 17 - 負債 10의 部分 即 純流動資產額 7로서 構成되어 있다. 따라서, 固定資產은 資本金과 同額으로 表示되어 있고, 結果 貸借對照表는 平均되어 있다. 非營利會計의 B/S는 이 固定資產과 同額의 部分을 特別히 내어 設備基本金으로 表示하고 있으므로 보기에 따라서는 企業會計의 表示方法보다合理的이다.

第2圖는 負債 19 - 流動資產 12 = 他人資本(또는 長期負債) 7과 自己資本 11로서 固定資產 18이 構成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非營利會計에서는 어떻게 表示하는가 보자.

(設例 1) 總資金收支計算으로 한다. (以下設例 3까지 같다)

建物建設이 當年度에 起工되어 完成하는 경우, 長期借入金이 5,000원, 建設費가 5,050萬원이라 한다. (以下設例 3까지 單位는 萬원으로 한다)

- ① (借邊) 現・預金 5,000 (貸邊) 歲入豫算(長期借入金) 5,000
- ② (借邊) 歲出豫算(新館建築費) 5,050 (貸邊) 現・預金 5,050
- ③ (借邊) 固定負債基本金 5,000 (貸邊) 長期借入金 5,000
- ④ (借邊) 建物 5,050 (貸邊) 設備基本金 5,050

上記 分介에 依한 B/S 部分表示

(資產)	(負債・基本金)
建物 5,050	長期借入金 5,000
	設備基本金 5,050
/	固定負債基本金 $\Delta 5,000$
<u>5,050</u>	<u>5,050</u>

設備基本金 $5,050 - \Delta 5,000 = 50$ 는純設備基本金이며,自己資金 50의 부분만이 기본금으로計上되고, 借入金 5,000의資金金額으로建物 5,050을取得하였음을表示한다.
(設例 2)

建物建設이次年度에서 끝나는 경우,起工年度의會計處理로서 長期借入金 5,000,建設假計定 3,000으로 한다.

⑤ (借邊) 現・預金 5,000 (貸邊) 歲入豫算(長期借入金) 5,000

⑥ (借邊) 歲出豫算(新館建築費) 3,000 (貸邊) 現・預金 3,000

⑤를 바꾸어서서

⑦ (借邊) 固定負債基本金 5,000 (貸邊) 長期借入金 5,000

⑥를 바꾸어서서

⑧ (借邊) 建設假計定 3,000 (貸邊) 設備基本金 3,000

上記 分介에 의한 B/S 部分表示

(資產)	(負債・基本金)
建設假計定 3,000	長期借入金 5,000
	設備基本金 3,000
/	固定負債基本金 $\Delta 5,000$ $\Delta 2,000$
<u>3,000</u>	<u>3,000</u>

設備基本金 $3,000 - \Delta 2,000 = 1,000$ 는赤字表示이다. 이것은借入金中 아직 2,000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現在時點에서는資金이 남아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資產의部에는 3,000의建設假計定이表示되어 있으므로,兩面으로부터 建築中인 것을表示하고 있다. B/S上의現・預金이 2,000以下이며는建築資金의流用을말한다.

(設例 3)

設例 2의建築이完成된年度의경우完成額 5,000,長期借入金返済額이 1,000이다.

⑨ (借邊) 歲出豫算(新館建築費) 2,000 (貸邊) 現・預金 2,500

⑩ (借邊) 歲出豫算(長期借入金) 1,000 (貸邊) 現・預金 1,000

⑨를 바꾸어서서

⑪ (借邊) 建設假計定 2,500 (貸邊) 設備基本金 2,500

⑩을 바꾸어서서

⑫ (借邊) 長期借入金 1,000 (貸邊) 固定負債基本金 1,000

新館完成에서

⑬ (借邊) 建物 5,500 (貸邊) 建設假計定 5,500

上記 分介에 의한 B/S 部分表示

(資產)	(負債・基本金)	
建物	5,500	長期借入金
		設備基本金 5,500
/		固定負債基本金 <u>△4,000</u>
	<u>5,500</u>	<u>1,500</u>
		<u>5,500</u>

設備基本金 5,500 - 固定負債基本金 4,000 = 1,500는 新築이 完成되고, 그 取得費는 5,500이며 長期借入金 5,000을 500 만큼 超過하고 있다. 이自己資金에 의한 建設部分은 純額의 設備基本金으로 計上되고, 그것에 借入金 1,000을 返済해서 1,000 만큼 純設備基本金이 增加한結果가 된다. 따라서, 建物에 關한 純財產部分이 1,500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이 후부터는 借入金을 返済한 金額만큼 純設備基本金은 增加하게 된다.

V. 結論

지금까지 非營利團體의 會計에 對하여 보았다. 매수가 많을수록 非營利會計의 實體가 좀 더 明確해지는 것 같다. 그러나 到底히 非營利會計問題를 完全히 解明한다는 것도 不可能하다. 그래서 이 글을 끝맺는데 있어서 몇 가지 基礎的部分에 對해서 말하고자 한다.

非營利會計는 그 自身의 公開에 對해서는 極히 消極的이다. 오늘날까지 非營利會計는 決算結果를 公明正大하게 發表해야 그 實體를 社會一般에게 明示하고 그 批判을 받아야 한다는 要望은 없었던 것 같다. 이것은 關係當局者에게 承認되어 極秘로 取扱이여 金庫 속 깊이 保管되어 왔다. 非營利團體의 社會性이 클수록 公開의 要請은 強하다.

非課稅한 것도 매우 큰 恩典이다. 非營利團體는 國家經費와 自治體經費를 위한 資金의 分擔을 每年 면제받고 있다.

이것은 公共的인 効果達成이란 目的이 存在하기 때문이다. 또 그 目的達成의 効果는 課稅에 의한 効果보다도 커야 한다. 그러므로 非營利團體는 國內에 居住하여 生存하는 限 그 나라의 納稅者에 對하여 決算을 公開하고 事業活動에 의한 効果를 開陳하고 納稅者大衆의 批判

은 받아야만 그 優待恩惠에 答하는 길이다.

公開를 위한 監查實施의 基本的 要件으로서 非營利會計에 關한 會計原則의 樹立制定이 當面한 課題다. 이 論文의 最終的目的도 非營利會計原則의 作成을 可能케 하는데 寄與하는데 있다. 이 原則制定의 作業은 大事業이다.

官公署會計에서 不愉快한 일이 發表되고 있다. 監查院이 實地로 調査하여 指摘한 不當事項은 全部라고 볼 수는 없다. 稅金을 納付하는 國民으로서는 기분 나쁜 일이다. 또한 不當한 補助金도 있다. 國家의 補助를 받아서하는 事業의 過大申告도 없지 않다. 大學管理 特히 國立大學의 財產管理도 보다 더 徹底해야 된다고 본다. 위와 같은 國費의 浪費는 官公署會計가 單式處理 때문에 發生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이 官公署會計의 苦腦다.

지금 非營利會計界는 低調한 會計處理를 하고 있다. 이것을 充分히 認識하여 이 段階를 漸次높은 段階에 올려야 한다. 非營利會計處理의 전모를 充分히 把握한 뒤 實務現場에서의 處理能力에 따라 高位 段階에 誘導하여야 한다.

參 考 文 獻

1. Eric J. Kohler, A Dictionary for Accountant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57.
2. Municipal Accounting and Auditing, Chicago: National Committee on Governmental Accounting, 1951.
3.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Uniform Chart of Accounts and Definitions for Hospitals, Chicago, 1959.
4. Standards of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for Voluntary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s, New York: National Health Council and National Social Welfare Assembly, 1964.
5. Accounting for Nonporfit Organizations: An Exploratory Study, published by the Bureau of Business Reseach at Indiana University, 1965.
6. Voluntary Health and Welfare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Their Role and Responsibilities, New York: The Rockefeller Foundation, 1960.
7. Eleanor K. Taylor, Public Accountability of Foundations and Charitable Trust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53.
8. John Dale Russell, The Finance of Higher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4.
9. F. Emerson Andrews, Attitudes Toward Giving,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53.
10. Ralph Dale Kennedy and Steward Yarwood McMullen, Financial Statements: Form, Analysis, and Interpretation, Homewood, Ill: Richard D. Irwin, Inc., 1954.
11.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Administration, Washington, D. C., 1952.
12.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ccounting Research and Terminology Bulletin, Final Ed. 1961.
13. Robert H. White, "Municipal Budgets," Journal of Accountancy, April, 1960.
14. Edward S. Lynn, Robert J. Freeman, Fund Accounting, Theory and Practice,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74.
15.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Committee to prepare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

-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Evanston, Ill.: The Association, 1966.
16. The National Committee on Governmental Accounting, Governmental Accounting, Auditing, and Financial Reporting, Chicago: The Municipal Finance officers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1968.
17. Lennox L. Moak and Kathryn W. Killian, Operating Budget Manual, Chicago: Municipal Finance officers Association, 1963.
18. Emerson O. Henke, Accoun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s,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Inc., Belmont, California, 1966.
19. R. M. Mikesell, Leon E. Hay, Governmental Accounting, Richard D. Irwin, Inc., 1973.
20. Morey, Lloyd and Hackett, Robert Phillip. Fundamentals of Governmental Account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51.
21. Tenner, Irving, and Lynn, Edwards. Municipal and Governmental Accounting;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60.
22. Foster, J. Rhoads, and Rodey, Bernard S., Jr. Public Utility Accounting. New York: Prentice-Hall, Inc., 1951.
23. 阪本寅藏, 非營利會計, 東京, 中央經濟社, 1972.
24. 高橋吉之助, 村山徳五郎, 學校法人會計의 理論, 東京, 國元書房, 1965.
25. 伏見章, 非營利法人の複式簿記, 東京, 中央經濟社, 1963.
26. 高橋吉之助他, 學校法人會計制度の基礎, 東京, 國元書房, 1967.
27. 公益法人實務研究會, 公益法人の理論と實務, 東京, 公益法人協會, 1961.
28. 鈴木啓允, 藤巻治吉, 非營利法人の會計實務, 東京, 森山書店, 1962.
29. 長澤榮一郎, 社團法人・財團法人の會計實務, 東京, 同文館, 1972.

A Study of Accounting Procedure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Park, Han Joon

Governments and other not-for-profit organizations have experienced dramatic growth in recent years and have emerged-individually and collectively-as major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forces in our society.

Governments and other not-for-profit organizations are unique in that:

1. The profit motive is not inherent in their inception or operation.
2. They are usually owned collectively by their constituents; i.e., ownership is not normally evidenced by individually owned equity shares which may be sold or exchanged.
3. Those contributing financial resources to the organization do not necessarily receive a direct or proportionate share of its goods or services; e.g., the welfare recipient most likely did not pay the taxes from which his benefits are paid.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xists, therefore, because a community or society considers it necessary or desirable to provide certain goods or services to its group as a whole, often without reference to whether costs incurred will be recovered through charges for the goods or services or whether those paying for the goods or services are those benefiting from them. In most instances NFP organizations provide goods or services which are not commercially feasible to produce through private enterprise and/or which are deemed so vital to the public well-being that it is felt that their provision should be supervised by elected or appointed representatives of the populace.

Expectation of income of gain is the principal factor motivating investors to provide resources to profit-seeking enterprises. On the other hand,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xists to provide certain goods or services to a community or society as a whole, often without reference to whether costs incurred are recouped through charges levied on those receiving them and without regard to whether those receiving the goods or services are those paying for them. There is no profit motive; there are no individual shareholders to whom dividends are paid.

The sources of resources vary widely among not-for-profit organizations. Governments are unique in that they may force resource contributions through taxation. Other not-for-profit organizations also derive resources from a variety of sources. Religious groups

and charitable organizations usually rely heavily on donations, though they may have other revenue sources. Some colleges and universities rely heavily upon donations and income from trust funds; others depend upon government appropriations or tuition charges for support. Finally, hospitals generally charge their clientele, though few select their patients on the basis of ability to pay, and many rely heavily upon gifts and bequests.

In the NFP environment decisions concerning resource acquisition and allocation, managerial direction and control of resource utilization, and custodianship for resources have traditionally been framed in terms of social and political objectives and constraints rather than profitability. The two most important types of legal and administrative control provisions affecting accounting in this environment are the use of funds and the distinctive role of the budget.

A double-entry system of account is universally recommended for both. The general mechanics of record-keeping are the same: documents form the basic record, books of original entry are kept and posted to general ledgers and subsidiary ledgers, trial balances are drawn to prove the equality of debits and credits, a chart of accounts properly classified and properly fitted to the organization's structure is essential to good accounting.